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환경개선을 통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시장 경쟁력을 위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함(별표 제10호).
- 구청장이 시장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III. 검토의견

1. 관계법령 검토

먼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항의 규정에서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위법규에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취지는 상위법령에서는 도로통행이나 도로구조에 미치는 영향, 공익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도로여건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그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점용료 산정기준 신설 필요성

○ 서울시 건축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2001. 5. 9일 건설교통부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협조 공문에 의하면,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준을 그대로 당해 지역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 및 업체 등으로부터 도로의 여건이나 지역실정이 도외시된 도로점용료의 부과라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법의 근본취지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 또한 2003. 3. 10일 서울시로부터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공문에 의하면, 서울시건축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며, 아울러 2004. 9. 1일 현재 자치구별 조례개정 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중 8개구가 개정이 완료되었고, 4개구는 구청장 방침을 득하여 부과유예 또는 징수유예중에 있으며, 1개구가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도로점용료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광장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의 하나인 통로 비가리개설치에 따른 점용료율을 현행 0.05에서 0.0001로 인하조정하는 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시장경쟁력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봅니다.

IV. 관계법령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